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18
----------	-----

2022. 4. 25.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4. 13.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2. 4.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4.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목적, 설치 및 기능 규정
-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규정
-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사항 규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심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심의회 운영 등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인용 또는 축약하여 명시하고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은 통상적인 입법례에 따라 체계와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그동안 상위 법령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 없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오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